

단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

년 월 일 제정
년 월 일
년 월 일
년 월 일
년 월 일
년 월 일
년 월 일
년 월 일
년 월 일
년 월 일

학년도 대학원 학사제도 변경에 따른

장

조

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행정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

조 적용범위와

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

장

조 우수학생의

행정학과 소속 교수들은 행정학과 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

장 교과과정 및

조 교과목 배정과

- ① 교과목은 개설전공을 고려하여
- ② 배정에 있어 교수의 기득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외부 교수나 전문가에게도 전문가라 함은 해당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를 박사학위를 소지한 국책연구소의 석사이상의 학위를 지닌 중앙정부 과장급이상 공무원
- ③ 지도교수는 학생이 전공과 부합되는 교과목들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적으로 수강지도를

조 학기 당 강좌

학기 당 개 내외의 교과목 강좌를

조

안식학기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 교수들의 강의가 균형적으로 배분되도록

장

조 지도교수의

지도교수의 선정은 학생의 전공희망의사를 고려하여 주임교수가 학과교수들과
여 인의 교수에게 한 학기당 박사과정 학생 인을 초과하여 배정할 수

조 교수의 정년과

교수는 정년과 동시에 지도교수의 자격을

장

조 전공자격시험의

학생의 학업능력 향상 및 학문성취도 제고를 위해 전공자격시험을 적극

전공자격시험

학생이 전공자격시험 시행 전 월 또는 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단독
는 행정학과 전임교수와 인 으로 학위논문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게재한 경우
공자격시험 신청만으로 통과한 것으로

조 전공자격시험의 과목과

전공자격시험의 과목과 배점은 대학원학칙 및 동 시행세칙의 일반적 기준을

① 석사는 박사는 **통합과정은** 이상을 취득하거나
에 한해 응시할 수 개정

② 석사학위 전공자격시험은 **전임교원의 과목** 중 과목으로 과목당 점을
으로 하며 이상 득 한 경우 해당 과목의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개정

③ 박사학위 전공자격시험은 **전임교원의** 중 과목으로 각 과목당 점을
으로 하며 이상 득 한 경우 해당 과목의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개정

④ **전공자격시험의 과목은 지도교수의 과목을 개 이상 선택 할 수 특별한 경우**
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 신설

⑤ 통합학위과정 전공자격시험은 박사학위과정에

⑥ 이 항은 년도 학기 입학자부터 효력을

조 전공자격 시험과목의

시험과목은 학생이 수강한 과목 중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수

시험의 출제 및

모든 시험과목의 출제와 채점은 최근 당해 과목의 강의를 담당했던 교수가 맡는 것을

원칙으로

장 학위심사 청구 논문 제출 및

조 박사학위 심사 청구논문

대학원 학칙 및 동 시행세칙에서 정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한 박사과정 학기 이상의 학생은 누구나 박사학위 심사 청구 논문을 제출할 수

조 의 승인 및

①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논문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발표하여야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행정학 관련 학술지에 단독 또는 과 전임교수와 인 으로 학위논문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편 이상 게재하여야 본 항은 년도 학기부터 년 학기 입학자에게 효력을

② 연구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연구계획서에 연구의 필요성 및 이론적 분석의 틀과 구체적인 예상 결과 및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연구계획서 심의과정에서 학과교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들에 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정 보완하여야

③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학술지에 단독 또는 행정학과 전임교수와 인 으로 학위논문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게재한 경우에는 연구계획서의 발표만으로 학과교수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본 항은 년도 학기 이전 입학자에게는 적용을

④ 연구계획서 심사 통과 후 항에서 정한 논문게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비발표 및 최종 심사신청이 본 항은 학년도 학기 이후 입학자부터 효력을

⑤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단독 또는 행정학과 전임교수와 인 으로 학위논문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게재한 경우 연구계획서 심사를

⑥ 박사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발표의 승인조건인 학술지 등재와 관련하여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공동지도교수가 있을 지도교수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인 으로 학위논문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편 이상 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한 경우에도 연구계획서를 발표할 수 본 항의 와 공동지도교수는 행정학과 전임교수를 전공자격시험과 연구계획서 발표 면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학년도 학기 입학자부터 신설

연구계획서의

① 연구계획서를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학위논문 심사 신청서와 함께 획서를 최소 심사일 일전에 학과에 제출함으로써 효과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

② 지도교수는 심사청구 논문들이 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에 학술논문 별쇄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

③ 지도교수는 심사일 일전에 주임교수에게 심사일정을 통보하여야 주임교수는 전체 교수에게 심사일 일전에 심사일정을 공지하여야

④ 연구계획서의 심사는 지도교수의 관리 하에 지도교수 포함 인 이상의 행정학과 임교수가 참석하여 진행하여야 그 결과를 주임교수에게 일 이내에 통보하여야

- ⑤ 학과교수회의의 승인을 받지 못한 연구계획서는 차기에 심사를 신청할 수

논문의

- ① 박사학위논문의 최종 심사를 받고자하는 학생은 심사신청 이전에 학과 예비발표를 통하여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예비발표 시 논문의 완성도가 낮다고 참석교수전원이 판단할 차기에 수정 발표를 명할 수
- ② 예비발표는 조의 연구계획서 심사와 동일한 절차를
- ③ 지도교수는 신청청구 논문들을 학과교수들에게 배포하기 예비발표의 형식적 건을 갖추었는가를 검토하여야
- ④ 박사학위논문의 최종 심사를 받고자하는 학생은 월 졸업의 경우에는 같은 해 그리고 월 졸업의 경우에는 전 년도 월까지 예비발표를 통과하여야

조 논문심사위원

- ① 예비발표신청 이후 학생의 지도교수는 대학원 학칙에 따라 최종 심사를 진행할 수
- ② 심사위원의 추천은 행정학과 교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논문주제가 하여 학과 교수가 심사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과 교수들의 동의를 얻어 타 과 교수도 추천할 수

조 석사학위 논문의

- ① 석사학위 논문의 심사는 학과 에서 합격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
- ② 학과 는 대학원의 논문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
- ③ 학과 의 진행은 박사학위 논문 연구계획서의 심사절차를

조 최종 논문심사의

논문심사위원회에서는 최종 논문심사의 진행을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장에게

조 의사결정

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전체교수 이상의 위임 과 참석 교수의 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